

공시송달공고

중구 관내 도로상 불법노점 적치로 인한 도로법 위반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'소유자 불명'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제 목 :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
2. 법적 근거 :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, 「행정대집행」 제3조(대집행의 절차)
3. 위반 사항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-204 도로 상 판매대 불법적치
※불법적치 노점(판매대) 위치 및 사진 : 행정대집행 영장의 현황 참조
4. 행정처분명 : 불법노점(판매대) 행정대집행 계고
5. 공시송달 대상 : 불법노점(판매대) 소유자
6. 공고기간 : 2024. 05. 23. ~ 2024. 06. 18.(27일간)
7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8. 공고내용
 -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도로(을지로6가 18-204)에 설치된 소유자 불명의 판매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 - 우리구에서는 같은법 제74조(원상회복),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를 위반하여 원상회복(자진수거) 명령[2024.04.17.(수)까지] 및 행정대집행 계고 [2024.05.20.(월)까지]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 - 이에 따라,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합니다.
 -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 및 행정소송법 제20조(제소기간)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9. 문의 :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☎02-3396-6053

붙임 : 행정대집행 영장 1부.

2024. 05. 22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